

청주지방법원 2018. 9. 13 선고 2018가단347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13.

## 주 문

1. E(F생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/9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 B, C은 각 2/9지분에 관하여 2001. 3. 28. 보은등기소 접수 제2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**판사강부영**

별지